

2024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존중과 감사로 구성원이 행복한 원광중학교 원 광 중 학 교

Ē

카 궴	
^	

2024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I . 목적 ··································
I. 방침 ···································
Ⅲ.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3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3
4.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4
IV.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V. 지필평가 ····································
1. 평가문항 출제5
2. 고사 관리 방법20
VI. 수행평가 ····································
1. 수행평가 방법
2. 수행평가 시행23
VII. 인정점 부여 ···································
Ⅷ. 학업성적 결과 처리
Ⅸ.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2. 결석 39
3. 지각·조퇴·결과 ···································
X.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44
XI.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리
XII. 독서활동상황 관리 ···································
XIII.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
XIV 성적 사정 및 포상 ··································
XV. 내신 성적 산출50
XVI.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50
※ 부칙
2024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I . 목적 ··································
Ⅱ. 현황 및 문제점 ···································

Ⅲ. 학업성적관리 법률적 체계
IV.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 53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단계 검토 순서 53
2.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절차 53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4. 교과(학년)협의회 내실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55
※ 학생평가 월별 운영 매뉴얼(예시)
V.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 59
1. 성취평가제 적용 내실화
2. 학업성적관리 단계별 철저한 관리 59
3. 정기고사 평가문항 검토59
4. 수행평가 운영59
5. 교내 학업성적관리시스템 운영60
6.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부적정 민원 사례60
<mark>별 지</mark>
[별지 1] 학생평가 단계별 운영 매뉴얼62
[별지 2] 단위학교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66
[별지 3]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75
[별지 4] 고사감독 배정 및 감독수행 단계 체크리스트79
[별지 5]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80
[별지 6]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81
[별지 7] 이의신청 기간 운영86
[별지 8]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88
[별지 9] 재시험처리88
[별지 10] 2024 학생평가 시행 보안관리 점검표91

2024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본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중학교에서 적용할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Ⅲ 방침

- 1. 본교는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 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3. 본교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 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 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5. 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별도 공문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6.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한다.
 - ※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7.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u>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교과

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u>70% 이상</u>인 과목 나. 시수가 적은 과목(1단위)
- 8.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문장으로 입력한다.
-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10.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1. <u>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u>은 [별지 5]를 참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고 <u>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내</u>한다. 또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 12.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 13.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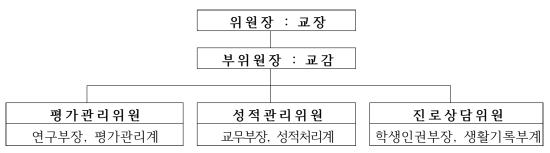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 행하다.
- 다.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인권부장, 성적처리계, 생활기록부계, 평가 계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학업성적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라.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한다.
- 마.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조직도]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이외의 세부 사항 심의 (가산점 부여 항목·기준·부여 대상자 심의 결정 등)
- 아. 자유학기(연계학기)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자.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u>교과협의회는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 생활교양과, 예체능</u> <u>과</u>로 구성한다.
- 나. 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3)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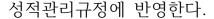
▼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 1. 교과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 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 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 기준(배점) 등은 각 학교와 교과의 교수·학습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교과협의회 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 다.
- 4. 확정된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 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를 통해 변경된 계획안을 확정하고 학교장 결재 후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 ※ 평가 실시 전에 평가 운영(지필평가 범위, 수행평가의 시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5.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 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u>후기고 내신성적 산출기준일</u> 이전까지 입력하고 마감한다.
-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 하도록 조치한다.
- 8.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 평가문항 출제

- 가.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에는 평가관리실(교무실), 인쇄실을 학 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 지필평가 기출문제는 직전 년도 문제를 교무실 방문을 통해 열람(사진, 복사 등 외부유출 일체 금지)하도록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3월(1주일), 8 **월(1주일)**로 한다.
- 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 한다.([별지 1],[별지 3]참고)
- 다.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교사 간 협의하여 공동 출제한다.
- 라.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열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조절하고, 문항당 배점(소수점 배점 등)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 마.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2)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 3)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4)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5) 고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 6)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 7)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 바. 지필평가 문항*은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하며, <u>서답형은 지필평가</u> <u>총 배점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과(학년)협의회</u> 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



- * 지필평가 문항은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과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구분됨.
- 사. <u>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u>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 ※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 <u>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u> 되어야 한다.
 - 예)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1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30%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40%
 - * 지필평가를 학기당 2회 실시하는 과목에 한하여, 그 중 1회를 교과별 (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따라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아.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평가요소별 배점 등).
- 자. 문항정보표는 NEIS에 있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영역, 성취기준 (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NEIS에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 차.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 교사, 평가담당 부장, 교감 등이 철저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 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 카. 과목별·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100% = 지필평가 반영비율 + 수행평가 반영비율)*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2024학년도 1학기)

🧓 국어과

과 목 명		국 어(1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	0%			40%						
	1차고사(2차고시	·†(30%)	0 - 1	4-1-4-4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이해 영역	표현 영역	독서 영역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6%)	21%	9%(6%)	20%	1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국01-04] [9국01-06] [9국01-09] [9국03-03] [9국03-06] [9국04-02] [9국04-07] [9국05-02]	[9국01-03] [9국01-05] [9국01-07] [9국02-02] [9국03-05] [9국03-09] [9국04-06] [9국05-01] [9국05-03] [9국05-06] -08]	[9국01-02] [9국01-04] [9국01-06] [9국01-09] [9국03-05] [9국03-09] [9국04-05] [9국04-07] [9국05-02] [9국05-05]	[9국01-03] [9국01-05] [9국01-07] [9국03-03] [9국04-02] [9국04-06] [9국05-01] [9국05-03] [9국05-06] 5-08]	[9국05-01] [9국05-02] [9국05-03] [9국05-08] [9국04-06] [9국04-07] [9국03-03] [9국03-06] [9국03-09] [9국02-01] [9국02-03] [9국02-08] [9국05-02]	[9국01-01] [9국01-02] [9국01-03] [9국01-04] [9국01-05] [9국01-07] [9국01-09] [9국01-11] [9국02-02] [9국04-05]	[9국03-01] [9국03-02] [9국03-03] [9국03-04] [9국03-05] [9국03-06] [9국03-08] [9국03-09]					
기본점수	0점	0점		점	8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4월	<u>I</u>	7-	월	3월∼6월	3월∼6월	3월~6월					

과	목 명	국 어(2학년)										
평기	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	경비율		6	0%			40%					
		1차고/	\ †(30%)	2차고/	나(30%)			_				
평기	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이해활동	표현활동	독서				
영역	격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	경비율	21%이하	9%(6%)	21%	9%(6%)	20%	10%	10%				
	육과정 취기준	[9국02-10]	[9국01-02] [9국01-08])1-11]		[9국03-07] [9국04-08]	[9국05-09] [9국01-02] [9국05-04]	[9국01-08] [9국01-11] [9국04-08]	[9국02-10] [9국03-07]				
기년	본점수	0	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	1학기	4	월	7월		3월∼6월	3월∼6월	3월∼6월				
시기	2학기	10)월	12	2월	9월~10월	9월~10월	9월 ~ 10월				



수학과

과 목 명	수학(1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			40%					
평가영역	1차	고사(30%)	2ネ	·고사(30%)	과정 평가	문 제 해결력	형성 평가				
7/16 Fi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서술)	평가	해결력	평가				
영역만점	60점 이하	40점이상 (20점이상)	70점	30점이상 (20점이상)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18% 이하	12%이상 (6%이상)	21%	9%이상 (6%이상)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7점	4점				
교육과정 성취기준		[9수01-01] ~ [9수01-05] [9수02-01] - [9수02-02]		[9수02-03]-[9수02-05] [9수03-01-[9수03-03]		[9수01-04] [9수02-04] [9수03-02]	[9수02-05]				
평가시기 1학기		4월 중		7월 중		3월 - 6월	중				

과 목 명	수학(2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1	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선택형 서술형	2차고사(30%) 선택형 서답형	과정평가	문제 해결력 평가	형성평가					
영역만점	60점 이하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18%이하 12% 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6점	4점					
교육과정 성취기준	[9수01-06] [9수02-06] [9수02-07] [9수02-08] [9수02-09] [9수02-10]	[9수02-11] [9수03-04] [9수03-05] [9수03-06] [9수03-07] [9수03-08]	[9수01-06] [9수02-06] ~ [9수02-11] [9수03-04] ~ [9수03-08]	[9수01-06] [9수02-06] ~ [9수02-11] [9수03-04] ~ [9수03-08]	[9수01-06] [9수02-06] ~ [9수02-11] [9수03-04] ~ [9수03-08]					
평가시 1학기	4월 중	7월 중		학기 중						
기 2학기	10월 중	12월 중		학기 중						

과 목	. 명	수학(3학년)									
평가병	방법		지 필 평	기			수 행 평 가				
반영태	비율		60%				40%				
평가영	a ca	1차고	사(30%)	2차-	고사(30%)	과정 평가	문제 해결력	됩니 떠기			
5/16	o i	선택형	서답형(서술)	선택형	서답형(서술)	46 97	군세 에걸릭	형성 평가 			
영역단	<u></u>	60점 이하	40점이상 (25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15점이상)	15점	15점	10점			
## 영비오 18% 12%이상		12%이상 (7.5%이상)	21% 이하	9%이상 (4.5%이상)	15%	15%	10%				
기본경	점수	C)점		0점	7점	7점	<u>4점</u>			
교육과정 [9수01-07], [9수0 성취기준 [9수01-08] [9수01-09], [9수01-09],		├02-12], ├02-13] ├03-09], ├03-10]	[9수01-07] ~ [9수01-10], [9수02-12],~ [9수03-10]	[9수01-07] ~ [9수01-10], [9수02-12], ~ [9수03-10]	[9수01-07]~ [9수01-10], [9수02-12],~ [9수03-10]						
T# 71.171	- Han Line 1학기 4월 중		7	7월 중		3월 - 6월 중					
평가시기 2학기		10 °	월 중	1	2월 중		9월 - 10월 중				

🧓 사회/도덕과

과	목 명	도 덕(1학년)										
평기	')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	병비율		60	0%			40%					
평기	' 1영역	1차고 선택형	-사(30%) 서답형 (서술)	2차고 선택형	사(30%) 서답형 (서술)	비판적 사고활동	공감활동	실천활동				
영역	벽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10점이상)	70점 이하	30점 (1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양	병비율	21% 이하	9%이상 (3%)	21%이하	9%이상 (3%)	20%	10%	10%				
	유과정 위기준	9도 9도	.01-01 .01-02 .01-03 .01-04	9501-05 9502-01 9502-02 9502-03		9도01-02 9도01-04	9도02-01	9도01-03 9도01-05 9도02-03				
기본	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4월	7월			학기중, 수시					

과 목 명	도 덕(2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0%			40%						
	1차고	사(30%)	2차고	사(30%)	ᆸᆝᅲᅡᅻ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비판적 사고활동	공감활동	실천활동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10점이상)	70점 이하	30점 (1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3%)	21%이하	9%이상 (3%)	20%	1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도	.02-05 .02-06 .02-07	9502-07 9503-04 9503-05		9도02-05 9도02-07	9도02-06	9도02-05 9도02-06 9도02-07					
기본점수		0점	()점	8점	4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4월	7	7월		학기중, 수시						

2024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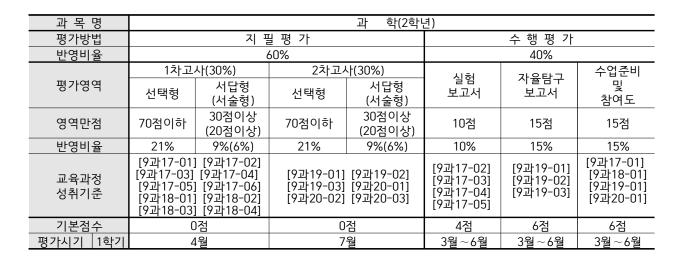
과목명													
평병법		지필	<u> </u> 평가		수행평가								
빈영비율		6	0%			40%							
TT#7 KOHO#	1초[고	r ((30%)	2초[2	사(30%)	<u> 단원내용</u> 활용능력	프로젝트	개인별주제발표						
평명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인권과헌법	경제생활괴선택	환경문제와지속 가능한환경						
영역민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빈영비율	60%	40%(%)	60%	40%(%)	10%	20%	10%						
<i>교</i> 위정 성취7운		[%(일사)06-02] [%(일사)06-03]	[9사(일사)08-02] [9사(일사)08-03] [9사(일사)97-01] [9사(일사)09-02]	[9시(일시)08-01] [9시(일시)08-02] [9시(일시)08-03] [9시(일시)97-01] [9시(일시)09-02] [9시(일시)09-03]		[%(일사)08-02]							
기본점수	0	점	C	점	4점	8점	4점						
평가 사기 ^{1학} 기	5	열	7	7월	4월	3~6월	5월						

과 목 명		역사(2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1	0%			40%			
	1차고시	ł(30%)	2차고	나(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수업 준비	학습지 정리	단원 평가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10%	20%		
교육과정 성취기준	[9901-02] [9901-03] [9902-01] [9902-02] [9902-03] [9902-04] [9904-01] [9904-02] [9904-03] [9904-04]		[9역03-02] [9역03-04] [9역05-02]	[9902-04] [9903-01] [9903-02] [9903-03] [9903-04] [9905-01] [9905-02] [9905-03] [9906-01] [9906-02]		[9역01-03] [9역02-03] [9역03-02] [9역04-01] [9역04-04]	[9역02-01] [9역02-04] [9역03-03] [9역04-02]		
기본점수	02	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1학기	4	월	7월		3월∼7월	3월∼7월	3월∼7월		
시기 2학기	10	월	12	2월	9월 ~ 12월	9월 ~ 12월	9월~12월		

과 목 명				역사(3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	0%			40%	
	1차고/	나(30%)	2차고	사(30%)		OH 11-	역사인물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역사일기	역사 타이포그래피	역사인물 브랜드상품홍 보포스터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	9%(6%)	21%	9%(6%)	10%	10%	20%
교육과정 성취기준	[9과07-03] [9과08-01]	[9과07-01] [9과07-02] [9과07-03] [9과07-04] [9과08-01] [9과08-02] [9과08-03]		[9과08-02] [9과08-03] [9과09-01] [9과09-02] [9과09-03] [9과09-04]		[9과08-01] [9과08-02] [9과08-03]	[9과07-03] [9과07-04] [9과08-01] [9과08-02] [9과09-01] [9과09-03]
기본점수	0	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1학기	4	월	- 7월		3월∼6월	3월∼6월	3월∼6월
시기 2학기	10)월	1	2월	9월 ~ 10월	9월 ~ 10월	9월 ~ 10월

<u></u> 과학과

과 목 명				과 학(1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	0%			40%	
	1차고/	나(30%)	2차고/	나(30%)	시동		수업준비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실 험 보고서	자유탐구	및 참여도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5점	15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6%)이상	21%이하	9%이상 (6%)이상	10%	15%	15%
교육과정 성취기준	[9과02-03],	[9과02-02], [9과02-04], [9과04-02], [9과04-04],	[9과05-03] [9과06-01]	[9과05-01],[9과05-02], [9과05-03],[9과05-04], [9과06-01],[9과06-02], [9과06-03], [9과06-04]		[9과05-03], [9과05-04], [9과06-02]	[9과02-01] ~ [9과06-04]
기본점수	0	점	0점		4점	6점	6점
평가 시기 ¹ 학기	4	월	7	월	3월~6월	3월~6월	3월 ~ 6월



과 목 명				과 학(3학년	1)		
평가방법		지 필	명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	0%			40%	
	1차고시	\f(30%)	2차고/	나(30%)	시청	가은타기	수업준비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실험 보고서	자율탐구 보고서	및 참여도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21%	9%(6%)	21%	9%(6%)	15%	15%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과17-03] [9과17-05] [9과18-01]	[9과17-01] [9과17-02] [9과17-03] [9과17-04] [9과17-05] [9과17-06]		[9과19-01] [9과19-02] [9과19-03] [9과20-01] [9과20-02] [9과20-03]		[9과19-01] [9과19-02] [9과19-03]	[9과17-01] [9과18-01] [9과19-01] [9과20-01]
기본점수	0	점	0점		6점	6점	4점
평가 시기 ¹ 학기	4	월	7	월	3월∼6월	3월∼6월	3월∼6월

🧓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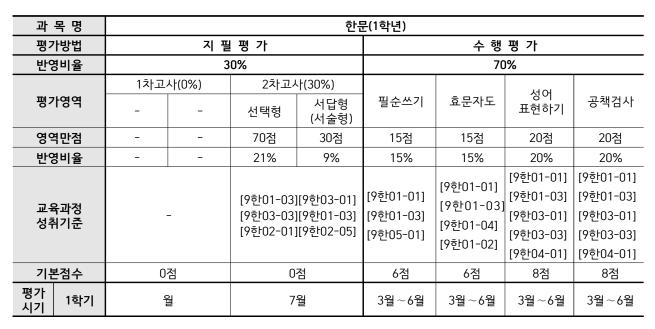
과 목 명	영어(3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		4	0%			
ᄪᄀᅜᅼᅄ	1차고사(30%) 2차고사(30%)		E 71	W 71	ロトテレフリ	0171		
평가영역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영역만점	70점 30점 이상 이하 (20점 이상)	70점 30점 이상 이하 (20점이상)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이상 이하 (6% 이상)	21% 9%이상 이하 (6% 이상)	10%	10%	1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영03-01] ~ [9영03-07] [9영03-09] [9영04-01] ~ [9영04-05]			[9명02-02] [9명02-03] [9명02-05] [9명02-06] [9명02-08]	~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2점			
평가시 1학기	4월	듣기, 말하기(1회) 쓰기/읽기(수시)						
기 2학기	10월	12월	듣7	l, 말하기(1호	<u>) 쓰기/읽기(-</u>	수시)		

과 목 명		영어(1학년)								
평가방법		지 :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1차.	고사(30%)	2차고	-사(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 <u>술</u> 형)	듣기	쓰기	말하기			
영역만점	70점이히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 이상)	21% 이하	9%이상 (6% 이상)	10%	2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영03-0	명03-01] ~[9명03-09] [9명03-01] ~[9] ~[9영03-09]	[9영01-02] ~ [9영01-09]	[9영04-01] [9영04-03] [9영04-05]	[9영02-05]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평가 1학기		4월	- 7월		3월∼6월	3월∼6월	3월∼6월			
시기 2학기					9월~11월	9월~11월	9월~11월			

과 목	l 명				영어	(2학년)				
평가병	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태	비율		60%				4	0%		
II: 71-0	aa l	1차고사	(30%)	2차고	사(30%)	드기	쓰기	ロトラトフリ	읽기	
평가역	ö i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듣기		말하기	2i / l	
영역대	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태	비율	21%	9%	21%	9%	10%	10%	10%	10%	
교육: 성취:)1] ~ [9영03 영04-01] ~		3-09]	[9영01-02]	[9영04-01] ~ [9영04-05]	[9명02-02] [9명02-03] [9명02-05] [9명02-06] [9명02-08]	- ~ [9영03-07]	
기본	점수	0점 0점			0점	4점	4점	2점		
평가시	1학기	4월 7월				듣기, 말하기/쓰기/읽기(수시)				
기	2학기	10 §	<u> </u>	12	2월		<u>듣기, 말하기/</u>	<u>쓰기/읽기(수시</u>	.)	

🧓 생활교양과

		중국어(1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0%		70)%					
ᄪᅼᄀᅜᅼᅜᅼ	2차고	나(30%)		ロトテレフリ	Д 71	пЕжыо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듣기	말하기	쓰기	포트폴리오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0%	20%	2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생중-03-02] [9생중-03-03] [9생중-04-02] [9생중-04-03] [9생중-05-01]		[9생중-05-01]	[9생중-02-02]	[9생중-04-02]	[9생중-04-01] [9생중-04-02] [9생중-04-03] [9생중-05-01] [9생중-05-02] [9생중-05-03]				
기본점수	0점		6점	6점	6점	3점				
평가 시기	7	월	3월~4월	4월~5월	5월~6월	3월~6월				



과 목 명		정보(2학년)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	0%						
평가영역	정보사회와 소프트웨어	미래 사회 탐색	정보 윤리 실천	정보 구조화					
영역만점	20점	20점	30점	30점					
반영비율	20%	20%	30%	3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정01-01]	[9정01-02]	[9정01-03]	[9정02-01] [9정02-02] [9정02-03]					
기본점수	8점	8점	12점	12점					
평가시기	3월	4월	5월	6월					

과	목 명			기·	술.가정과(1학년)			
평2	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역	경비율		61	0%			40%		
		1차고/	<u></u> (30%)	2차고/	<u> </u>				
평기	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평가1	평가2	역량평가	
영역	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역	경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10%	10%	2.%	
	육과정 취기준	[97 7†01-01], [97 7†01-03], [97 7†02-03], [97 7†02-07]	[97 7 02-01]	[97 7 02-03], [97 7 02-04] [97 7 02-12], [97 7 03-01] [97 7 03-02], [97 7 03-03] [97 7 03-04], [97 7 03-05]		[97 7 01-01] [97 7 01-02] [97 7 01-03]	[97 7 02-03] [97 7 02-04] [97 7 03-01] [97 7 03-02]	[97]7[01-01]	
기	본점수	0	 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4	월	7월		3월~6월	3월~6월	수시	

과	목 명		기술·가정(3학년)							
평기	가방법		지 필	!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	경비율		6	o %			40 %			
П4 7	71.01.01	1차고시	· (30%)	2차고	사(30%)	TH 7 L 1	TH 7 L 2	여라면가		
· 항기	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평가 1	평가 2	역량평가		
영역	격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10점	20점		
반영	경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10%	10%	20%		
	육과정 취기준	[97 7 01-04], [97 7 01-05] [97 7 01-06], [97 7 02-10] [97 7 02-11]		[97 7 02-05], [97 7 02-08], [97 7 02-12], [97 7 03-07], [97 7 03-09]	[97 7 02-09] [97 7 03-06]	[97 7 02-11]	[97 7 03-08]	[97 7 01-04] ~ [97 7 03-09]		
기분	본점수	0:	 점	0점		4점	4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4	열	7	월	3월~6월	3월~6월	수시		

🧓 예체능과

과	목 명		미술(1	학년)	
 평	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	영비율		100	%	
평기	가영역	표현1	표현2	체험	감상
영역	역만점	40점	30점	30점 10점	
반영	영비율	40%	30%	10%	20%
	육과정 취기준	[9미 02-01] [9미 02-02]	[9미 02-03] [9미 02-05]	[9¤ 02-04] [9¤ 01-01]	[9 ⁰ 03-01] [9 ⁰ 03-02] [9 ⁰ 03-03]
기는	본점수	16점	12점	4점	8점
평가	1학기	3월∼4월	5월~6월	3월∼7월	7월
시기	2학기		자유호	낚기 제	
٦L			п. Д. (2)		
	목 명 가방법		미술(2 수 행		
	경비율		<u> </u>		
	가영역	 회화	디자인	체험	감상
	격만점	 40점	30점	10점	20점
	경비율	40%	30%	10%	20%
	[9미02-0 교육과정 성취기준 [9미02-0 [9미02-0		[9 ⁰ 02-04] [9 ⁰ 02-05]	[9 ⁰ 03-03] [9 ⁰ 03-04]	[9¤ 03-01] [9¤ 03-02]
기년	본점수	16점	12점	4점	8점
평가	1학기	3월∼4월	4월~5월	3월~7월	6월~7월
평가 시기	2학기	8월~9월	9월~10월	9월~11월	12월

과 목 명		미술(3학년)						
평가방법			수 항	l 평 가				
반영	경비율		10	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감상	체험 및 감상			
영역	격만점	30점	30점	30점	10점			
반영	경비율	30%	30%	3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미 02-01] [9미 02-03] [9미 02-04]	[9미 02-01] [9미 02-02] [9미 02-03] [9미 02-04]	[9미 03-01] [9미 03-02] [9미 03-03]	[9미 01-01] [9미 01-04] [9미 03-03]			
기년	본점수	12점	12점	12점	4점			
평가	1학기	4월 ~ 5월	5월~6월	6월	3월∼6월			
시기	2학기	8월~9월	9월~10월	10월	9월~10월			
과 목 명		음악(1학년)						
평가방법			수	행평가				
반영비율			1007	널(100%)				
평	가영역	표현 1	표현 2	감상	생활화			

과 목 명	음악(1학년)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7	덬(100%)				
평가영역	표현 1	표현 2	감상	생활화			
평가방법	가창실기	기악실기	서술 및 실음평가	참여 및 발표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학기말 반영비율	30%	30%	20%	20%			
교육과정 성취기준	[7음01-01]	[7음01-05]	[7음02-01]	[7음03-01]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8점			
평가 시기 ^{1학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과 목 명		음악(2학년)							
평가방법									
반영비율		100점(100%)							
평가영역		표현 1	표현 2	감상	생활화				
평가방법		가창실기	기악실기	서술 및 실음평가	참여 및 발표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학기말 반영비율		30%	30%	20%	20%				
교육과정 성취기준		[8음01-01]	[8음01-05]	[8음02-01]	[8음03-01]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8점				
평가	1학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시기	2학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과 :	목 명	음악(3학년)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점	(100%)					
평가영역		표현 1	표현 2	생활화1	표현3	감상	생활화2			
평가	방법	가창실기	기악실기	참여 및 발표	창작 및 신체표현 평가	서술 및 실음 평가	참여 및 발표			
영역만점		20점	20점	10점	20점	20점	10점			
학기말 반영비율		20%	20%	10%	20%	2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음01-01]	[9음01-05]	[9음03-01]	[9음01-02]	[9음02-01]	[9음03-01]			
기본점수		8점	8점	4점	8점	8점	4점			
평가	1학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시기	2학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영역만점 10점 3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10% 30% 30% 20% [9체03-01] [9체02-02] [9체03-01] [9최03-01] [9최03-01] [9최03-01]	과정평가 10점 10% 2체02-01] 2체02-08] 2체03-01] 2점 3월~6월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줄넘기) 경쟁영역 도전영역 보고서 고 영역만점 10점 30점 30점 20점 보고서 반영비율 10% 30% 30% 2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체02-08] [9체03-01] [9체02-01] [9체03-01] [9체03-01] [9체03-03] [9체03-03]	10점 10% 7체02-01] 7체02-08] 7체03-01] 2점								
평가영역 건강체력 (출념기) 경쟁영역 도전영역 보고서 고 영역만점 10점 3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10% 30% 30% 20% [9체03-01] [9체02-01] [9체03-01] [9체03-01] [9체03-01] [9체03-02] [9체03-03] [9체03-03]	10점 10% 7체02-01] 7체02-08] 7체03-01] 2점								
평가영식 (출남기) 경쟁영식 도선영식 모고서 영역만점 10점 3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10% 30% 30% 2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체02-08] [9체03-01] [9체02-01] [9체02-02] [9체03-03] [9체02-03] [9체03-01] [9체03-01]	10점 10% 7체02-01] 7체02-08] 7체03-01] 2점								
반영비율 10% 30% 30% 20% [9체03-01] [9체02-01] [9체03-01] [9체03-02] [9체03-02] [9체03-03] [9체03-03] [9체03-03] [9체03-03]	10% 7체02-01] 7체02-08] 7체03-01] 2점								
[9체03-01] [9체02-01] [9체03-01] [9체03-01] [9체03-01] [9체03-01] [9체03-02] [9체03-03] [9체03-03] [9체03-03]	체02-01] 체02-08] 체03-01] 2점								
교육과정 성취기준 [9체02-08] [9체03-02] [9체02-02] [9체03-01] [9체 [9체03-03] [9체02-03] [9체02-03]	7체02-08] 7체03-01] 2점								
기본점수 2점 6점 6점 4점									
	 }월 ~ 6월								
평가 시기 1학기 4월 5월 7월 6월 3 st									
과 목 명 체육(2학년)	체육(2학년)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줄넘기) 경쟁영역 도전영역 보고서 고	과정평가								
영역만점 10점 30점 3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10% 30% 30% 2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체02-08] [9체03-10] [9체02-02] [9체03-09] [9최	/체02-01] /체02-08] /체03-09]								
기본점수 2점 6점 6점 4점	2점								
평가 1학기 4월 5월 7월 6월 3 ³	3월~6월								
	<u>8월∼1월</u>								

2024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과 목 명		체육(3학년)								
평7	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	경비율									
평가영역		건강체력 (줄넘기)	경쟁영역	도전영역	보고서	과정평가				
영역만점		10점	30점	3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10%	30%	30%	20%	10%				
교육과정 성취기준			[9체03-09]	[9체02-01]		[9체02-01]				
		[9체02-08]	[9체03-10]	[9체02-02]	[9체03-09]	[9체02-08]				
			[9체03-11]	[9체02-03]		[9체03-09]				
기본점수		2점	6점	6점	4점	2점				
평가	1학기	4월	5월	7월	6월	3월∼6월				
시기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8월~1월				

2. 고사 관리 방법

- 가. 평가문제 인쇄 및 관리
 - 1)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관리담당 교사(평가계)가 인쇄를 의뢰한다.
 - 2) 평가 관련 교직원은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u>출제장소</u> 및 평가관리실(교무실), 인쇄실을 <u>통제구역으로 지정</u>한다. 또한,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u>보안관리자(연구부장)</u> 및 <u>인쇄관리 담당자(행정실 인쇄담</u> 당)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및 친인 척이 아닌 직원으로 지정한다.
 - 4)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고사 시행

- 1) 정기고사는 고사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2) 정기고사 시간표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 하여 본령과 동시에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다. 특히 본령 전에는 문제를 풀지 않게 하고,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해당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 학생이 새 답안지에 옮겨 기록한다.
- 3)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 고사실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담임교사의학급' 및 '교사의 자녀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에 시험감독을 배제한다. 감독 배정 시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하고 학교장의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를 교체할 경우에는고사 시행 전에 평가담당 교사가 반드시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고사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 4)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상인 경우 필수사항), 시험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한다.

- 5) <u>감독교사</u>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u>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u>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시험 시작 전 <u>감독교사</u>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 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u>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u>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7) <u>감독교사</u>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u>부정행위</u> <u>발생 시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u> <u>고지</u>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 8)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u>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고사본부(교무실, 복도 등)에서 대기</u>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 정정으로 고사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고사본부의 조치(시험 시간 연장 등)에 따르며, 고사 종료 후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9)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수용 봉투)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10) 평가담당 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를 출제자(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채점하게 한다.
- 11)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기준, 인정(유사) 정답 및 부분점수를 함께 공개한다.
- 1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에 준하여 운영한다.

다. 채점 및 답안지 처리

1) 정기고사 <u>답안지의 채점은 교무실</u>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u>학교장의 승인</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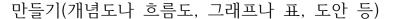
없이 지정장소 이외로의 반출을 자제한다.

- 2)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교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 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교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 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다.
- 4)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교사가 학생 본인 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킨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 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이의신청 기간은 [별지 기를 참고한다.
- 5) 결재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을 수정할 경우, 결재 절차 ([별지 1] 참고)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 교사는 수정 전 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학년)협의회 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받고 채점에 적용한다.
- 6)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성적처리가 끝난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서답형 채점기준 포함)와 고사원안'등을 당해 학교에 <u>5년간</u> <u>(성적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한다.</u>

₩<mark>수행평가</mark>

1. 수행평가 방법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 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2. 수행평가 시행

- 가.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 기준 (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목별·평가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학년) 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나. <u>교과별 수행평가 계획</u>(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기준 등)을 <u>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u> **초에 사전 안내**한다.
-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또한,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u>후기고 내신성적 산출기준일</u> 이전까지 입력하고 마감한다.
 - 2)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단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의 영어 듣기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4)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5) 체육·예술 교과(군)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 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6)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7)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8)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교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사. 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기본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점수 = 해당 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해당 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 당해 학생의 지필평가 득점 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기본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점수 = 해당 영역 수행평가 배점 × <u>당해 학생의 지필평가 득점</u> 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듣기·말하기도 이에 준하여 적용

- 아.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 (학년)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자.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¹⁾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u>졸업 후</u>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차. <u>수행평가 결과물</u>은 <u>학년말 성적처리 후 반환</u>한다.(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 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반환)
- 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타. 학습 독서활동 결과물의 수행평가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독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과목 수행평가
 총점의 일정 비율을 과목 관련 독서 실적으로 반영토록 권장한다.
 -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되, 교과(학년)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파. 국어과의 독서평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되, 반영비율 및 실시 여부는 교과(학년)협의회 협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¹⁾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등)를 의미



1.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및 부여

정기고사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시를 하는 경우, 아래 의 2. 결시생 인정점 산출방법 및 3. 인정비율 부여 방법을 참고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로 인정점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모든 중학교의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

- * 평균점수 비율(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동일 학기 내 고사 간의 난이도 차를 반영하여 인정점 부여
- 평균점수 비율(인정점)
 - = 학생 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결시고사 해당과목평균(순수응시생)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 기준점수
 - = 학생 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결시고사해당과목평균(순수응시생) 응시고사해당과목평균(순수응시생)

2.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방법

- 가. 일반 결시: 동일 학기 내 1차, 2차 지필평가 중 1회의 성적이 없는 경우
 - NEIS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 산출됨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 에서 '학년도', '학기', '학년', '산출기준'을 선택하고 {조회} → 반드시 '기준 고사/영역'설정 시'1차고사↔2차고사'교차설정
- 나. 모두 결시: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처리
 - NEIS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계산된 기준점수와 인정점 직접 입력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모두결시}에서 {학교자체인정점부여}로 설정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수동입력}에 계산된 기준점수와 인정점을 직접 입력

- ▶ 평균점수 비율(인정점)
- = 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 기준점수
- = **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유사) 과목 응시고사 점수** × <u>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u> 직전 학기 동일(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

1순위: 직전 학기 내 동일 과목 응시고사 점수 활용

'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 과목 응시고사 점수'는 <u>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1, 2차</u> 고사 성적 중 하나로 결정함.

↓(직전 학기 내 동일 과목의 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2순위: 직전 학기 내 유사 과목(교과) 응시고사 점수 활용

- ①학생의 직전 학기 유사 과목(교과)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②'학생의 직전 학기 유사 과목(교과) 응시고사 점수'는 <u>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u>
 - 1, 2차고사 성적 중 하나로 결정함.

↓(직전 학기 내 동일(유사) 과목(교과)의 성적이 없는 경우)

3순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한 별도의 기준점수 활용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점수는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로 한다.

3.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명시된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2) 기타결석(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 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
- 다) 법정 감염병이지만 학교장의 사안 판단 하에 격리된 시험장 설치를 통한 시험 응시를 요구하였으나 학생과 보호자가 거절하며 결시를 원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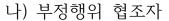
다. 최하점의 차하점2)을 부여하는 경우

-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 도피 등)
- 나)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라) 징계로 인한 결시
- 마) 학업중단 숙려기간 중의 결시
-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부정행위자

²⁾ 차하점은 최하점에서 -1점으로 하되, 음수일 경우 0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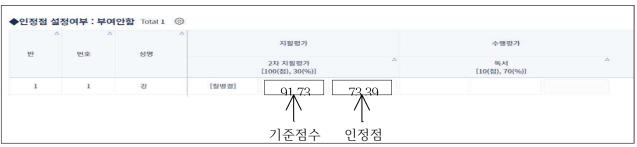
4. 인정점 산출 예시

- ※ (예시) 2학기에 지필고사 1회만 실시하는 A과목을 질병결석으로 미응시한 학생의 인정점 산출 및 NEIS 입력 방법
 - 1) 인정점 산출에 필요한 점수 확인
 - ① 직전 학기의 A과목의 지필고사 평균 점수: 75점
 - ② 직전 학기 학생의 A과목 점수: 86점
 - ③ 결시 고사의 A과목 지필고사 평균 점수: 80점
 - ④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질병결석 반영비율: 80%
 - 2) 산출 계산식
 - ① 기준적수
 - = **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유사) 과목 응시고사 점수** × <u></u> 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 직전 학기 동일(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
 - $= 86 \times \frac{80}{75}$
 - = 91.7333333...
 - ※ 기준점수 입력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91.73)를 입력
 - ② 인정점 = 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 91.7333333... × 80% ●

= 73.3866666...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인정점 입력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73.39)를 입력
- 3) NEIS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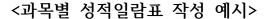


5.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VI.수행평가-2.수행

- 평가 시행-아항'을 참고하되,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제시된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업성 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6. 학기 도중에 재취학, 전입학 등 학적 변동 학생은 원적교에서 취득한 성적(동일 (유사) 과목)이 있을 때는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취득한 성적(동일(유사) 과목)이 없을 때는 학적변동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학적 변동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교과별 교수학 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 7. 유예, 면제 등의 사유가 끝나 재취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학업성적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과목평균'과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2024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2학년 ()반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	가(60%)	수행평가(40%)						
번호,	명칭,영역 (반영비율) 서명	1차 (30%)	2차 (30%)	(10%)	♦ (10%)	(10%)	△△△ (1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452)
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452)
3	. — .									, ,
수	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_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95/100=28.50)은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 환산점수 8.80(10×44/50=8.80)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과목평균은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 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 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처리 기준일은 평가 계획상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유예·면제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3.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Α
80% 이상 ~ 90% 미만	В
70% 이상 ~ 80% 미만	С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А
60% 이상 ~ 80% 미만	В
60% 미만	С

- 4.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해당 교과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이를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수강자수를 달리할 수 있다.
- 5.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따라 학업성적관 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2)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3)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나.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7.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면제·유예 학생이 그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8. **재취학**, 전·편입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나.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다. 재취학, 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 학생의 전출 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 인적·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 학생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공란으로 둔다.
 - * 해당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 학교와 다른 경우 NEIS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 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다.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10.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의 성적처리

- 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에 의한다.
- 나. 조기진급자의 2학년, 조기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입한다.

11.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이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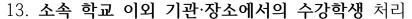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제3조의2에 따라 과목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을 통해 ○시간 이수함.

12.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

-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 [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2024학년도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3) 성적

- 가)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및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 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 나) 교육청 및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 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의 성적처리([별지 8] 참고)
 - 1) 학적: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

- 가) 출결은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
- 나) 해당 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한다.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

- 가) 성적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소속 학교의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4) 기타

- 가)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다.
- 나) NEIS: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한다.
- 다. 소년보호기관 학생의 학적·출결·성적처리([별지 8] 참고)
 - 1)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2) 학적

- 가)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 NEIS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34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등을 관리한다.
- 나)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위 라)항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3) 출결

- 가)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5]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나)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함)'되거나

-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결석' 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를 참조해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 4) 성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다. (5)의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성적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u>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또는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 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 (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u>
 -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 참조).
 -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u>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u>「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u>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u>.

- 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실시 하지 않는다(국가 및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원적교의 평가에 응시해야 함).
 - 2)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 (고사 기간, 평가방법, 응시방법 등)를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처리(기본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4)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 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처리(인정점 부여 등)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가~마'항 이외의 사항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X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 전 편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마.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로 한다.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입양	○ 학생 본인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 망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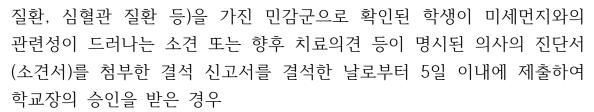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장이 인정한 경우
- 9) 시·도경찰청「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정치	홬돚	과려	출결·평가·기록	기준
7.	٩´ö'ٵ	~~`\	결공	- 건 - 건	풀결 경기 기축	/ lī

그 ㅂ	의정활동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구 분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		
ネ거키コ	출석 인정 결석	기다경 서		
출결처리	※ 수업일수의 10% 이나에서 결석하는 경우	기타결석		
하시라		기재 대상 아님		
학생부 기록	기재 대상 아님	※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타결석		
/ I¬		의 사유로 '교외활동(N일)'로 입력		
결석 시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기타건선에 따르 이전된 보신		
성적처리	인정점 부여	기타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u>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u> <u>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u>가 첨부된 <u>결석 신고서</u>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 ※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결석

-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 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등)

마. 기타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단위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시간,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 16:00)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단, 화요일의 경우 1, 2학년은 6교시 후(15:05), 3학년은 7교시 후(16:10)를 하교시각으로 한다.
-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1) 수업에 불참한 경우
 - 2) 교사의 사전 동의 없이 10분 이상 수업에 늦게 참여한 경우
 - 3)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현장을 이탈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 바. <u>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맨 처음 발생한 사안으로 처리</u> 한다.
-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자. 미인정일 때는 학부모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졸업할 때까지 보관한다.
- ※ 지각·조퇴·결과('가, 나, 다, 바'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 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이에 대한 안내를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하고, 단위학교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 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X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 1.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 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는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입력한다.
- 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다.
- 6.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단, 전입생의 경우는 전입교의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 7.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8.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 자유학기 전출·입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처리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요령'의 내용을 준수함.
- 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습 과정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기관의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XI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리: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 1.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하되,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가능함.
-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하며,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4.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 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5.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 '동아리활동'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 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내용과 실제 활동시간은 NEIS의 [{체육}-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 스포츠클럽활동내역관리]에 입력함.
- 6.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활동의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7. '1'항에 따른 자율활동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담당교사가 입력한다.
- 8. 2012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해당 시간은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한다.
- 9. 학생이 유예·면제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NEIS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 10.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 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XII 독서활동상황 관리: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 1.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란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 2.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2024학년도 2·3학년 해당).
-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은 NEIS 입력 및 관리 권장
-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 6.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 성적 사정 및 포상

1. 진급 및 졸업

각 학년 출석할 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진급 또 는 졸업(최종학년)을 인정하며 졸업생에게는 소정의 졸업장을 수여하되 그 밖의 각 학년 수료자에게는 수료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2. 유급 및 진급, 졸업보류 조치

결석 일수가 해당학년 출석할 일수의 1/3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과 성적 산출의 근거가 없어 평가가 불능한 자는 유급한다.

3. 성적 사정회

가. 학년 말에 행하는 교육과정의 모든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 교직원으 로 구성하는 성적 사정회를 설치하여 사정한다.

- 나. 성적 사정회는 경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하거나 학기별로 설치할 수 있되 어느 경우나 사정 사항은 학교장 승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다. 성적 사정회 구성 또는 운영체제는 성적 관리 위원회 체제를 준용하되 본 규정에 없는 사항 등은 일반 관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성적 사정 원안

성적 사정을 위한 성적 사정원안은 별도 소정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학년부장 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단, 성적사정 원안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는 되도록 실질적이며 간소하게 작성하고 성적원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요령을 규정할 수 있다.

5. 포상의 시기

포상은 시행하는 시기로 보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정례 포상(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포상)
 - 1) 학년말(수료식, 졸업식)포상
 - 2) 학기말 고사 후 포상
 - 3) 특별강조 기간 포상(청소년의 달, 교육주간,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 나. 별정 포상(부정기 또는 수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

6. 졸업예정자의 포상 종별 및 포상 내용

포상은 다음과 같은 종별에 따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사장상 : 졸업학년말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입 내신성적 산출기준(후기일반고 기준) 석차 1위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수여할 수 있으나, 학교장상을 중복 수상할 수 없다.
- 나. 학교장상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입 내신성적 산출기준(후기일반고 기준) 석차 2위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분야별(영역)우수상 : 3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년말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상은 동일인이 여러 분야에 걸쳐 우수한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중 대표적인 한 분야에 한하여 수상하도록 하며 교칙

- 을 위반하여 처벌 된 자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거나 행동발달 상황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아니 한다.
- 1) 출석상/근태상 : 학업을 위하여 성실하게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단, 출석상황에 대한 포상은 3학년말에 3개년을 통산하여 시행한다. 전입 복교 등 도중 입학생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상할 수 있다.
 - 가) 3년 개근상(3개년을 통하여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 나) 3년 정근상(3개년을 통하여 결석일수가 3일 미만인 자)
 - 다) 결석일수 산정 방법(출석상 사정을 위한 경우에는 지각, 조퇴, 결과등은 그 구분과 관계없이 3회를 1일 결석으로 산정하며 상고결이나 공결은 결석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특별상(학교장 수여)
 - 가) 공로상 : 교과 전 영역(수학.과학.영어.체육.음악.미술.문예.무용.발명.기타 부문)에 걸쳐서 시 단위 대회 1위 또는 도 단위 대회 3위 이상 의 입상 실적을 낸 자에게 수여한다.
 - 나) 선행상 : 선행 실적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다) 효행상 : 효행 실적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라) 봉사상 : 학급활동, 학생회 활동, 행사활동, 준거집단활동 등에서 항상 솔선수범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봉사.협동하는 정신이 뚜렷하 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 3). 특별상(대외상)

특별상은 학교장 명의가 아닌 외부 제3자에 의하여 시상되는 경우의 포상 이며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가) 기타 특별상(특정 목적이나 수여자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입 내신성적 산출기준(후기일반고 기준) 석차 선순위에 따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순위일 경우에는 사정회 의결에 의하여 선정한다.)
- 7. 학교장상에 대한 내신 적용
 - 가. 학업우수상은 내신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나. 교내 단체상(체육행사, 환경심사 등)은 내신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W 내신 성적 산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산출은 당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 한 본교 내신 성적 산출 방침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본교 내신성적 산출 방침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적용 표창 : 효행상, 자랑스러운원광인상, 귀공 자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선행상	표창별 0.5점
	F 0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부 장·차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2	자율 활동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 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 적용 여부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유공 항목별 0.5점
3	동아리	유공자	동아리활동반 부장 혹은 반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적용 동아리 : 배드민턴부, 보은회, 농구부, 락 밴드 동아리, 축구부, 과학반, 방송반, 도서부	및 우수자 표창항목별 0.5점
	활동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 적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0.00
4	가산점 제오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니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음.	배 봉사 이상의

(*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 <mark>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mark>: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제10의1조)의 결재 절차(4단 결재)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학년도 담임교사가,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한다. 다만, 제7조(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생략할 수 있다.
 - ※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음.
-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NEIS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 4.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 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다.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부 칙

- 1. 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학교는 이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과별(학년별) 교수 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정하여 활용한다.

2024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매뉴얼



목적

- 1. 학교 현장의 공정한 학업성적평가관리 정착 및 학교 학업성적의 신뢰도 제고
- 2.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 3. 학업성적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민원 최소화 및 만족도 제고



Ⅲ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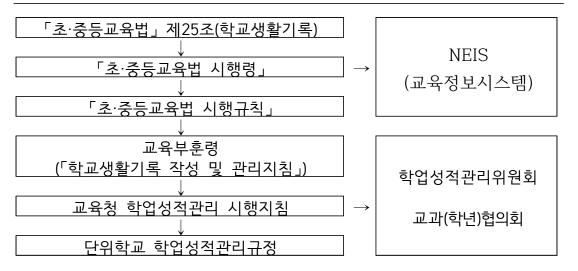
1. 현황

- 가. 학업성적관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체제 관련 업무 증가
- 다. 성적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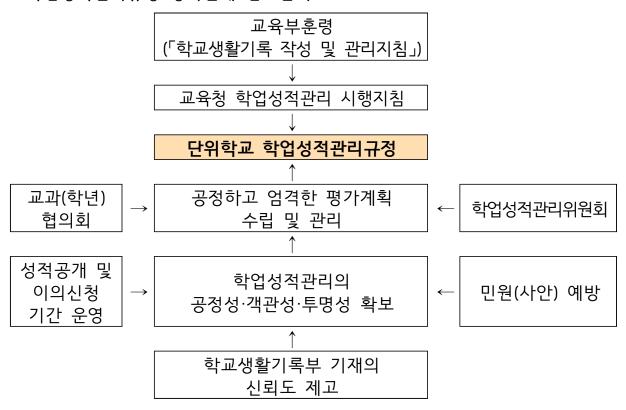
- 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성적관리 체제의 경직성
- 나. 성적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 상존
- 다. 성적관리와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 감독 의무 확대
- 라. 성적결과의 피드백 활용 필요성 증대에 따른 평가 전문성 요구

학업성적관리 법률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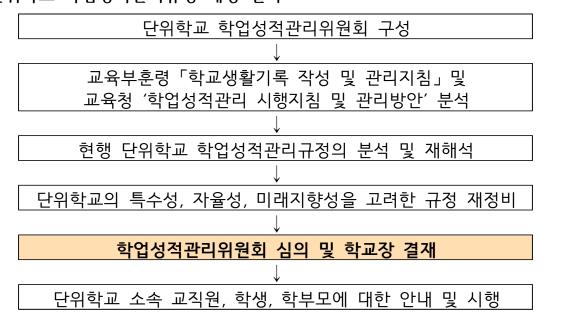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단계 검토순서



2.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절차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가. 구성

구 분	담 당	역 할
위원장	교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의 결재자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책임자
부위원장	교감	• 위원장 보좌 및 유고 시 대행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이 정함)
위원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정정 관련 업무에 대해 심의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 예:평가업무,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등)

나. 운영

- 1)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
- 2) 수시·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 사항을 심의
- 3)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 및 연수
-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다. 주요 심의 내용

-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 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 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7)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이외의 세부 사항 심의 (가산점 부여 항목·기준·부여 대상자 심의 결정 등)
- 8)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의 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 9)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필수 심의사항

- 1) 학년(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심의
- 2) 학업성적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심의
- 3)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시행 계획 심의
- 4) 학기말 성적 처리방법 및 인정점 부여방법 심의
- 5) 사안 발생 시 처리 방법 심의
- 6)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른 정정 사항
- 7) 수행평가 실시계획 심의 시 유의사항
 - 가) 학기별·교과별 수행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 나) 수행평가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 다) 수행평가의 시기 및 횟수의 적정성 검토
 - 라) 수행평가 영역별 평가기준, 배점, 기본점수, 인정점 확인
 - 마) 수행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확인
- 8)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관련 내용
- 9)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의 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4. 교과(학년)협의회 내실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가. 역할

수업 및 평가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	
- 학습목표의 진술	○성취도에 따른 평가결과 분석
- 성취기준·성취수준 설정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학습자 수준진단 및 난이도 조절
- 출제 및 채점 계획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도방안
- 서술형 문항 채점기준	○출제문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
- 결시자 인정점 부여방법	○민원 예방 및 평가만족도 제고
○ 과정중심 평가방안	

나. 교과(학년)협의회 활성화 방안

- 1) 교과(학년)협의회 시간 및 장소 명문화(제도화)
- 정기적인 교과(학년)협의회 실시(학기당 2회 이상): 교과(학년)협의회 일정을 학사일정에 삽입
- 2) 교과(학년)협의회 예산 지원 확대
- 3) 전체 교과(학년)협의회, 동학년 교과(학년)협의회, 세부 과목별 협의회 병행

학생평가 월별 운영 매뉴얼(예시)

※ 아래 일정은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가능

월	주요 업무 중점사항
	○ '새 학년 교육과정 세움 주간'을 활용하여 평가 방향 논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 제9조의 주요 개정사항 확인
	→ 대중대중 국년 →「전 북특 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주요 개정사항 확인 및 교원 연수 실시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분석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학년)협의회 구성
2월 ~ 3월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근거하여 개정 · 평가의 목적, 방향, 방침, 평가의 종류,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수립(교과(학년)협의회 실시)
7章 (8월 ~ 9월)	 과목별 교수학습-평가 방법 단원명(평가영역),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 요소, 수업-평가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등) 작성 과목별 평가 세부계획
	- 평가 개요, 평가 종류와 반영비율,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평가 유의사항, 수행평가 영역별 세부 기준, 평가 미응시자(결시자) 및 학적 변동자 처리, 평가 결과의 활용 ※ 학업성적관리규정 주요 내용(인정점, 기본점수 등)을 교원에게 안내하여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과 일치될 수 있도록 유의함.
	○ 교양 교과도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수립 필수 ○ 학업성적관리규정,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등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안내(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 통신문 발송)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정보공시
4월 (10월	 ○ 1차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1차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 학생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차고사 계획 안내(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 학생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통제(실시 계획에 따른 출제 시작일~고사 완료일)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따라 지필평가(반영비율, 만점), 수행평가 (영역, 학기말 반영여부, 반영비율, 영역만점) NEIS에 입력 ○ 교과(학년)협의회(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및 문항 점검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서답(서술)형 채점기준표 작성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근거한 문항 출제 →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문항 출제 및 검토

- 공동 출제 및 문항 오류 검토: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 작성(**[별지 3]** 참고)
- 난이도 및 배점 적절성 검토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재)
- ○고사원안 인쇄 및 보관
 - ▶ 인쇄담당자 및 평가보안담당자 지정
 - ▶문제지 보관 시 이중잠금장치(또는 이중철제문)가 된 평가관리실에서 보관

○ 1차고사 실시

- · 정기고사 유의사항(답안지 작성 요령, 부정행위 예방 교육 등) 안내
-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된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 · 시험시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시간 사용
- ▶ 매 시험시간 문제지·답안지 배부 등을 위한 '준비시간 5분' 별도 확보
-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시험시간에 고사본부(교무실, 복도 등) 대기
- 학생 질문 대비 또는 문항 오류 대응 조치
- ▶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에 준하여 실시

○ 1차고사 실시 후

-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실시
- · 정답 오류, 채점기준(유사답안, 부분점수 부여 등)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학생평가 단계별 업무 매뉴얼([별지 1])** 참고)
- ▶ 학생 개인별 성적 공개 및 확인 절차(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진행
- · 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발생 시 처리 절차 준수

사실 교과(학년)현의 심의사항 관할 재발 확인 회 협의 및 지역교육 공지 학교장 방지 및 학업성적관리 및 지원청 결재 대책 원인 위원회 심의 조치 사안 강구 파악 보고 (재시험 등) (재시험 등)

-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확정된 성적일람표를 학생 개인별 확인
- · 성적 산출 증빙자료(학생 답안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등) 5년 보관
- ▶ 문항 분석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분포 분석
- ·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2차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2차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 ▶ 학생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2차고사 계획 안내(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 ○학생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통제(실시 계획에 따른 출제 시작일~고사 완료일)

- 교과(학년)협의회(2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및 점검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서답(서술)형 채점기준표 작성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근거한 문항 출제
- ·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문항 출제 및 검토
- 공동 출제 및 문항 오류 검토: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 작성([**별지 3**] 참고)
- 난이도 및 배점 적절성 검토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재)

4월 5월

11월)

(10월

6월 (11월

○고사원안 인쇄 및 보관

- ▶ 인쇄담당자 및 평가보안담당자 지정
- ▶ 문제지 보관 시 이중잠금장치(또는 이중철제문)가 된 평가관리실에서 보관

3월 7월 (9월

12월)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따른 수행평가 안내

- · 수행평가 방법, 일시, 장소, 배점, 결시생 처리 규정 등 사전에 반드시 안내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따른 수행평가 실시
- 수행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 수행평가 영역별 채점
- - · 학생 개인별 성적 공개 및 확인 절차(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진행
 - 가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확정된 수행평가 성적일람표를 학생 개인별 확인(학생 서명)

○ 2차고사 실시

- · 정기고사 유의사항(답안지 작성 요령, 부정행위 예방 교육 등) 안내
- ·시험시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시간 사용
- ▶ 매 시험시간 문제지·답안지 배부 등을 위한 '준비시간 5분' 별도 확보
-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시험시간에 고사본부(교무실, 복도 등) 대기
- 학생 질문 대비 또는 문항 오류 대응 조치
- ▶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에 준하여 실시

○ 2차고사 실시 후

-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실시
- · 정답 오류, 채점기준(유사답안, 부분점수 부여 등)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학생평가 단계별 업무 매뉴얼([별지 1])** 참고)
- ▶ 학생 개인별 성적 공개 및 확인 절차(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진행
- · 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발생 시 처리 절차 준수

6월 7월 (11월 12월)

및 ⇒ 학업성적관리 ⇒ 기교 6 원인 위원회 심의 조치 가간 파악 (재시험 등) (재시험 등)			→		→	학교장 결재	→		→		→	–	
--	--	--	----------	--	----------	-----------	----------	--	----------	--	----------	---	--

-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확정된 성적일람표를 학생 개인별 확인
- ▶ 성적 산출 증빙자료(학생 답안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등) 5년 보관
- ▶ 문항 분석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분포 분석
- ▶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1차고사 후 ~ 2차고사 전 학적변동학생(취학, 재취학, 전·편입학 등), 위탁교육복귀 학생의 1차고사 성적 확인 및 처리
- 지필·수행평가 점수 누락자 및 결시생 인정점 부여 확인
- ○교양 교과 이수 및 자유학기성적 처리
- ○학기말 성적 산출 및 평가 결과 공개
- ○학기말 성적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위탁교육학생(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 제외)의 학기말 성적 입력
- ○학생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 ※ 자유학기는 모든 학생 대상 입력

※ 2학기는 1학기에 준하여 학생평가 운영



▼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1. 성취평가제 적용 내실화

- 가.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안내
- 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타당한 성취기준·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문항 출제로 특정 성취도에 분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2. 학업성적처리 단계별 철저한 관리

- 가. 「2024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 V. 지필평가 2. 고사 관리 방법 참고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평가 관리
- 다.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공동 출제·검토·채점 원칙 준수 등
- 라. 문답지 <u>배부시간(5분)</u> 확보를 통한 충분한 시험시간 부여

3. 정기고사 평가문항 검토

- 가. **[별지 3]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 활용
- 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가르친 내용 출제(출제 근거 및 성취기준 명시)
- 다.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 출제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라. 출제에서부터 최종 결재까지 문항별 타당성 및 편향성, 오류, 기출문제 재출제, 참고서 및 모의고사 문항 전재 출제 등에 대한 검토 강화
- 마. 내실 있는 교과(학년)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기고사 문항 난이도 조절 및 질 제고

4. 수행평가 운영

- 가. 교과(학년)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교과별 수행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분량 적정화로 학생 부담 경감 및 공정성 확보
- 나. 수행평가는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내 활동과정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실시
- 다. 수행평가 계획 사전 공지 및 결과 즉시 공개, 학생의 <u>이의신청 기회 부여</u>
- 라. 수행평가 반영비율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 마.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바.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u>과정 중심 수업 밀착형 평가 실시</u>
- ※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u>후기고 내신성적 산출기준일</u> <u>이전</u>까지 입력하고 마감

5. 교내 학업성적관리시스템 운영

- 가. [별지 1] '학생평가 단계별 운영 매뉴얼' 활용
- 나. 정기고사 시행 전 각종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연수 철저 (출제 및 채점교사, 담임교사, 감독교사, 학생 유의사항 등)
- 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엄격한 고사 관리
- 라. 학교 실정에 맞는 정기고사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적용([별지 2] 참고)
- 마. 이의신청 기간 운영으로 고사 관련 민원 사전 예방([별지 7] 참고)

6.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부적정 민원 사례

- ○시험감독 시간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다.
- ○시험범위를 담당교사별로 다르게 안내한다.
- ○이전학년도 문제를 재출제, 모의고사 문제 또는 참고서 문제를 가져온다.
- ○일부 교사가 특정 학급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 암시한다.
- ○문제지 배부 착오(예: 7쪽 중 6쪽만 배부, 타 학년 시험지 배부 등)
- ○시험시간 또는 시험이 끝난 후 문항 오류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을 무시한다.
- ○서답형(서술형) 채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
- 검증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문항을 출제하여 오해를 받는다.
- ○시험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지 않아 답안지가 분실되어 재시험을 치른다.
- ○일제식 지필평가 문항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을 유발한다.
- ○동일학년 동일과목임에도 담당교사에 따라 수행평가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
- 수행평가 영역별 채점기준이 모호하여 교사의 주관에 의한 채점이 이루어진다.
- ○단순 과제형 수행평가와 특정 시기 수행평가 집중 실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
- 법정 감염병 또는 생리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고사시간에 지각한 학생들에 대한 처리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
- ○문항 출제오류에 대하여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
- ○채점 후 학생 확인절차를 따르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
- ○고사관리원칙을 숙지하지 못해 교사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 ○이의 신청 기간 안내 부족으로 민원을 유발한다.

[별지]

학생평가 단계별 운영 매뉴얼

※ 아래 매뉴얼은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 가능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 업무 내용	담당자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책무성 신장을 위한 자체 연수 강화 ○고사 실시 계획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주요 평가 민원 내용, 교원용 단말기 보안관리, 평가 단계별 보안 점검, 문항 오류 및 재시험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한 고사 실시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안내	전 교원
	학생 대상 안내	○고사 시간표 및 평가범위 안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인정점, 지각생·결시생 처리 규정,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안내 ※ 관련 사항 누락없이 안내하도록 유의	평가담당 학급담임 교과담당
	학생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안내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을 고사원안 출제 시작일부터 고사 완료일까지 통제구역으로 운영 ○시험지 보관 시 분실 및 도난 유의, CCTV 설치, 보관장 이중 잠금장치 또는 이중철제문 등	평가담당
평 가 전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관련 교과(학년)협의회 실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평가범위, 출제유형, 평가요소 등 일치 여부 확인 선행학습 위반사항 여부 등 확인 고사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자, 쪽수, 문항 수, 배점 등) 배점 표시, 동점자 최소화를 위한 소수배점(석차등급 산출과목), 문항 수 및 배점 적정화, 역배점 지양 등 문항 출제 공정성 확보 공동 출제 및 공동 검토(교과담당교사 1인 출제 시 학교 실정에 맞는 검토 계획 수립·실시):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별지3]) 작성 	교과담당
		○이전 학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USB 등)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당 결재권자
		○ 고사원안(문항정보표) 파일은 '암호'설정하여 보관(이동식 저장매체이용), 네트워크(메신저, 이메일 등)로 평가 관련 자료 전송 금지○PC, 노트북 등 보안관리 강화	교과담당
	문항정보표 및 고사원안 작성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내용영역, 성취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등) 작성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표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확인용 고사원안(문항정보표) 및 파지 분쇄 확인	교과담당
	고사원안 검토	○고사 실시 계획과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내용(고사명, 고사일시, 과목명, 학년 등) 일치 확인 ○고사 원안 공통 검토 시간 확보(예: 공강 시간 활용)	교과담당 결재권자

		○결재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인쇄 및 보관 (보안관리)	○고사원안(문항정보표)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 ○인쇄담당자 보안 교육, 고사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고사원안, 인쇄 문제지, 파지 관리 철저) ※ 인쇄실 출입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 당일 인쇄가 어려울 경우 고사원안을 평가담당자에게 인계 ○문제지 인쇄 상태 확인 및 보완,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준비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 지정, 이중 잠금장치, 출입통제 등)	교감 행정실장 담당 부장 인쇄담당 교과담당 평가담당
		○'담임교사의 학급'및 '교사의 자녀 또는 친인척 관계 있는 학생의 학급'에 시험감독 배제	평가담당
	시험감독 배정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변경 시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	감독교사 평가담당
		○2인 감독, 학부모 보조감독, 복도감독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시험감독 배정(시험실 인원이 18명 이상의 경우 2인 감독 필수)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 업무 내용	담당자
	시험감독 발표	○고사 당일 발표 ▶출제교사는 해당 시험시간 중 고사본부(교무실, 복도 등) 대기	평가담당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 실시(교사, 학생 대상) ▶학부모 감독 시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실시	평가담당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칠판)	학급담임
평 가 시	고사 관리 유의사항	○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 '시험실 반입 금지' 및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 안내 ○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기기 포함) ○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등), 메모장(포스트잇 등), 연습장(종합노트 등), 모자, 장갑, 담요 등 개인 물품 ▶ 매 고사일 조회시간 및 문제지 배부 전 금지 물품 소지 여부 확인 ▶ 문제지 배부 전 부득이하게 소지 확인 시 수거(고사 완료후 반환) ※ 그 외 세부 사항은「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참고 ○ 부정행위 유형 안내를 통한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학급담임 감독교사

- ▶ 부정행위 유형
- ① 다른 응시생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②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④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⑥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⑦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⑧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정기고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운영
- 표준시간을 활용한 준비령·본령·종료령 타종 시행
- * 시험실별 시간이 서로 달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험 시간의 기준으로 사전에 설정한 표준시간 활용
- ○문제지·답안지 배부시간 및 과목별 실제 시험시간 확보
- ※ 시험 본령이 울리기 전 문제지·답안지 배부 완료
- ○지각생 처리 규정 준수
- 결시생 답안지(OMR카드) 작성(필요시)
- ○답안지 교체 허용 시간 준수
-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중요)
- ○답안지 회수봉투와 답안지의 감독교사 확인란에 동일한 날인 또는 서명
- ○답안지 회수봉투 기재사항(고사 명칭, 과목명, 고사일시, 응시 학급, 응시 현황 등) 확인
- ○교환·폐기·여분 답안지 등 회수
-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 감독교사 조치 절차
 - ▶ 적발된 부정행위 여부는 감독교사 간 합의로 판단
 - ▶ 당사자에게 적발 사실 고지, 평가담당에게 보고
 - ▶해당 시험 종료 후 학생 자술서 징구, 감독교사 조서 작성 및 담당 부장에게 제출
- ※ 부정행위자 답안지도 해당 답안지 회수봉투에 넣어 고사본부 제출
- 담당 부장(담당자) 조치 절차
- ▶ 평가관리자(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적발 사실 보고 및 부정행위자 자술서와 감독교사 조서 제출
- 평가관리자(학교장 또는 교감) 조치 절차
- ▶ 사안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포함) 소집 및 심의
-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정기고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운영

감독교사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 업무 내용	담당자		
	고사정답 공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고사 정답 공개	평가담당		
		○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보안관리 대책 준수 ※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점 ○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 감독교사, 평가담당 교사, 교과담당교사에게 인수인계 시답안지 매수 확인 철저 ○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 서답형 문항 채점 시 점수를 부여한 과정 기재, 교과담당교사 공동 채점, 채점 및 점수표기의 일치 여부 확인(교사 1명인 경우: 학교실정에 맞게 채점)			
평 가 후	답안 채점	 ○채점기준 변경 등 발생 시 절차 준수 ▶ 유사답안 및 부분점수 추가 등 채점기준 변경 시 교과(학년)협의 회(채점기준 수정 보완)→문항정보표 등 재결재, 적용 ○정답오류 발생 시 절차 준수 ▶ 일부 정답 오류인 경우: 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자→문항정보표 등 재결재, 적용 ▶ 정답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 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자→재시험 ○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발생 시 절차 준수 사실 확인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재시험 등) ○ 답안지 회수봉투 서명 확인(채점, 1검, 2검) 	교과담당 평가담당		
	이의신청 기간 운영	○학생 개인별 점수 공개·확인(학교 실정에 맞게 확인 절차 마련) ○이의신청 기간 운영(학생 점수 공개 후부터 3일 이내, 절차에 따라 처리) ※ 이의신청 기간 운영 시 학생·학부모 안내	교과담당		
	성적 최종 확인	○지필평가 점수누락자(위탁학생, 학적변동학생 등), 결시생 명단 확인 ○학생 개인별 성적 최종 확인 후 교과담당교사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확정된 성적일람표를 학생 개인별 확인 ※ 학교 실정에 맞게 확인 절차 준수			
	성적 마감 성적통지	○ 과목별 성적 마감 처리 ○ 모든 과목의 성적처리 후 마감 및 학교장 결재 ○ 학부모에게 성적통지			
	성적 산출 증빙자료 보관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분포, 문항 분석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단위학교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종합안내

○○중학교

I 2024학년도 0학기 0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및 고사당일 시간표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교육연구부장	전교직원 대상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평가담당	제출 마감일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유 있게 포장
1차고사 실시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교과담당	
OMR카드 리딩		성적처리담당	
성적 확인 및 정정		교과담당	리당완료 후 NEIS에서 교과담당교사카 채점
성적 이의신청 기간(3일간)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 단표 및 OMR카드 제출		평가담당	
성적 통지		학급담임	

구 분		시 작	끝	비고	
조 회	사전교육	08:40	08:50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평가 시 유의사항 전달 및 출결사항 기재	
1 7 1	문답지 배부	08:55	09:0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1 교시	평가 진행	09:00	09:45	정감독교사는 정면, 부감독교사는 후면위치	
0 7 1	문답지 배부	09:55	10:0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2 교시	평가 진행	10:00	10:45	정감독교사는 정면, 부감독교사는 후면위치	
0 7 1	문답지 배부	10:55	11:0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3 교시	평가 진행	11:00	11:45	정감독교사는 정면, 부감독교사는 후면위치	
4 7 1	문답지 배부	11:55	12:0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4 교시 	평가 진행	12:00	12:45	정감독교사는 정면, 부감독교사는 후면위치	

Ⅱ |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1. 고사시간표

		1학년	2학년	3학년
0월	1교시			
	2교시			
0일	3교시			
(0)	4교시			
0월	1교시			
	2교시			
0일	3교시			
(0)	4교시			
0월 0일	1교시			
	2교시			
	3교시			
(0)	4교시			
과목 수				

2. 2023학년도 정기고사 답안지 재검 및 이기 확인(2검)교사

< 1,2,3학년 >

편제명	과목명	단위수	이검교사

1. 시험문제 출제 시 유의 사항

- 가. 2024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출제하고 평가
- 나. 학년별 동일과목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공동 출제로 인한 성적 차 최소화(출제문제 학년별로 필히 공동 검토)
- 다. 고사 관련 자료(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에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공유금지, 메신저 전달 금지, **반드시 개인용 이동저장매체를 사용**
- 라. 고사 관련 자료(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는 외부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출력물 보관시 **잠금 장치 확인 필수**
- 마. 출제 완료 후, 수업 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특정 학생에게 출제 문제를 암시하거나 정리 명목으로 출제 문제 암시하는 의혹 시비 철저 차단

- 바.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배점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 최소화를 위한 소수 배점(선택형 50% 이상 권장)**. 문항마다 배점 표기하기 (마지막 장에 표로 제시해도 무방함)
 - ※ 난이도 상 비율 20%, 난이도 중 비율 50%, 난이도 하 비율 30% 권장
- 사. 서답형의 총 배점 비율은 지필평가의 30% 이상으로 하되, <u>서술형(국어, 영어, 수학,</u> 사회(역사포함), 과학: 20% 이상, 도덕은 10% 이상) 출제
- 아. 서답형(단답형, 완성형) 문항의 경우 **문항정보표 또는 별지에 채점기준, 부분점수 등 채점방법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
- 자. 출제 문항 중 부정적인 발문은 진한 글씨체로 작성하고 밑줄 긋기
- 차. 시험지 원안의 꼬리말에는 학년도, 과목명, 학년(학과), 학기, 고사명, 전체 페이지 중 몇 번째 페이지(1/7) 등을 기록함.
- 카. 출제한 고사원안과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서술형) 등은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 타. 교과담당 교사는 평가담당 교사로부터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받아 학급별로 포장하여 여분시험지와 함께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함(문제지 보관 철저). 학급별 시험지 첫 장의 좌측 상단부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 * 1-1 교실에 남아있는 1학년 시험지는 '잔류(1-1)', 2-1 교실로 이동한 1학년 시험지는 '이동(2-1)'

2. 시험답안 채점 및 결과 처리 시 유의사항

- 가. 문항정보표 정답/배점 입력
 - 1) 채점을 위한 정답과 배점은 NEIS의 다음 경로에 교과담당 교사가 직접 입력
 - 2)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확인 후 '고사', '학년', '과목'을 선택→ {조회} → {선택형}, {서답형}탭에서 문항별 '배점'과 '정답'을 입력→저장}→ {마감}

나. **채점**

- 1) 업무담당 교사가 카드리딩 후 파일을 업로드하면 교과담당 교사가 NEIS에서 채점
- 2)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채점]에서 '학년도', '학기' 확인 후 '고사', '학년', '과목'을 {조회} → 문항 채점 방식에서 '학생답안 서답형' 또는 '성적관리 서답형*'을 선택→ 해당 '강의실'을 선택→ {일괄채점}→ {확인}
 - * OMR카드에 서답형 답을 마킹하지 않고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서답 형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문항 채점 방식에서 '성적관리 서답형'을 선택하여 채점
- 다.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점수와 결시명칭, 학적변동 등을 확인하고, 학생답안이 없는 결시생은 '결시명칭'에, 학적변동 학생은 '고사별 학적변동'에 해당 내용을 선택하여 {저장}
- 라. 학생들의 고사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별 성적일람표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함. [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조회-개인별성적일람표]에서 '고사', '학년도', '학기', '학년', '반'→{조회} → 학급 전체 학생을 선택 → '개인별성적일람표' 출력
- 마. 학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접수
- 2) 교과담당 교사는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과목', '강의실'을 선택하고 {조회}
- 3) 학생 답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 OMR카드를 다시 읽어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적 파일올리기] 한 후 해당 학급에 대하여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채점]에서 재채점

바. 성적일람표 출력 및 학생 확인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종료 후 실시
- 2) [성적-지필평가조회/통계-지필평가조회-교과목별일람표조회-강의실별]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과목', '강의실'을 선택하고 {조회} → 출력
- 3) 성적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 후 완료된 성적일람표는 교과담당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사. 서답형 답안 채점 시 유의사항

- 1) 채점은 해당 교과의 출제교사 공동채점을 원칙으로 함
- 2) 채점은 학교 내에서 하며 학교 외부로 답안지 반출 금지
- 3) 정답은 O, 오답은 X로 답안 내용 위에 적색 펜을 이용하여 표기
- 4) 정정 사항은 두 줄을 그어 정정한 후 날인
- 5) 카드 봉투 및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 표지에 초검, 재검 교사는 날인 또는 서명
- 6) 서답형 답안 채점 시 각 문항마다 부분점수를 반드시 기록
- 7) 서답형 점수를 OMR카드에 이기 시 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마킹
- 8) 채점 도중 발생한 추가 유사정답, 부분점수는 반드시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추가 결재
- 9)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홍보하고, <u>성적의 정정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u> <u>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u>

아. 성적 마감

- 1) 교과담당 교사 마감
 -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과목', '강의실'을 선택하고 {조회} → {마감}
- 2) 평가담당 교사 마감 및 결재
 -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마감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선택하고 {조회} → {마감정보저장} → {확인} → {승인요청}

- 1. 출제 및 고사 기간 중 교무실에 학생 출입 금지 지도
- 2. 학급별 책상 배열 : 5(행) × 5(열)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수에 따라 적절히 배열함
- 3. 고사 당일 칠판에 재적 및 응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

[예: 재적 14명, 응시 13명, 결시 1명(1101 홍길동(질병))]

※ 출결사항에 '사고결'은 없으며, '미인정결'로 표시

- 4. 고사 당일 책상 속을 비우고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 지도
- 5. 고사기간 중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사전지도, 책상 위 낙서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지도, 부정행위자 처리절차 사전 안내

- 6. 수험생 유의사항 및 OMR 카드 작성 요령(**학번**, 성명, 과목명, 과목코드 등) 지도 답안용 카드에 학번, 성명, 과목명, 계열코드, 과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록할 것
- 7.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서답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청색펜**으로 작성하도록 지도(서답형 답안은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또는 샤프펜 절대 사용 금지

Ⅴ │ │ 시험감독 교사 유의사항

1. 시험감독 배정

자녀 및 친·인척 관계,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의 감독을 금지하고, **발표된 감독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가 감독을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 시행 전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담당교사가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를 올리도록 한다.

2. 시험 시작 전

- 가. 예비령(고사 시작 5분전)이 울리면 감독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학생 자리 재배치 및 소지품 정리 정돈 실시.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 반입시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공지하여 부정행위 사전 차단. <u>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 작성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공지. 책상, 벽 등에 교과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미리 공지.</u>
- 나. 정 감독 교사는 답안지 봉투에 과목 및 응시 현황을 기록하고 인쇄상태와 페이지 면 수 확인 지시
- 다. 예비령(고사 시작 5분전)이 울리면 교실에 입실하여 부감독 교사와 함께 문제지와 답 안지 배부
- 라. 고사 시작 후 정감독이 학생 답안용 카드에 서명.(미리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 ※ 정 감독은 평가관리실에서 문제지와 답안용 카드 수령 및 서명 / 부 감독 : 답안지 본부 반환
- 라.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u>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u>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단답형·서술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u>청색펜</u>으로 작성함 (연필 또는 샤프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지도
- ※ 학생 휴대 가능물품: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폔, 검정색폔, 청색펜, 샤프폔, 지우개

3. 시험 진행 중

- 가. OMR 카드는 학생 수에 맞게 배부하고, 여분은 시험 종료 후 평가담당교사에 제출
- 나. 문제지 배부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 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
- 다. 정감독 교사는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부감독 교사는 교실 뒤쪽에 위치하여 정 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 라. 문항 오류 대처 : 문항 오류 연락(감독관 -> 본부 평가계 -> 출제 담당자)

- 마.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 우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
- 바. 고사 시간 중 화장실 이용 시는 부감독 교사가 동행하여 화장실 칸 지정.
- 사. 정 감독 교사는 답안지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명을 바르게 기재하고 표기했는 지 확인하고 감독 확인란에 날인 또는 자필로 확인
- 아. 종료 3분 이내 답안지 교환 금지(단, 학생 책임 하에 종료령까지 표기 가능. 이 때 감독자는 기존 답안지 보관(고사 종료 후 폐기)하여 학생에게 답안지 선택권 부여.)
- 자. OMR카드 회수용 봉투 및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자 필로 성명 기재
- 차. <u>결시자를 확인하고 결시자가 있는 경우 결시자 카드를 만들어 수거용 봉투에 삽입</u> ※ 위탁학생은 결시자 카드 작성하지 않음.
- 아. 지각 학생 입실 허용.

4. 시험 종료 후

-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답안지는 왼쪽에 ,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맨 뒤에 앉은 학생으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함
- 나. OMR카드 등 모든 답안지는 번호 순서대로 수합하고 매수를 반드시 확인함
- 다. OMR카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카드 교체 시 뒷면의 이기 여부도 확인 (OMR 카드 답란에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 불가)
- 라. OMR카드의 답란에 적색 플러스펜으로 표시했더라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오답 처리(담임과 감독교사는 수시로 환기)
- 마. 고사 중 교환하여 폐기할 OMR카드는 그 자리에서 찢어 폐기처리
- 바. 수거한 답안지 매수와 확인 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봉투에 담아 즉시 평가계에 제출 답안지 회수 시 매수는 물론 답안지 학생 인적 사항 기재 및 마킹 유무 필히 확인. 감독관 확인(빨강색으로 정자 서명하거나 도장 날인)
- 사. **여분 답안지**(감독자 도장 및 서명이 들어간 여분 답안지 포함) **필히 회수** (부정행위 방지)

아. 답안지 분실 예방

: 고사 종료 -> 본부 회수함에 답안지 제출 -> 평가담당교사 즉시 매수 확인 -> 과목별 채점 담당 교사 1인에게 전달 -> 과목별 채점 담당자는 즉시 매수 확인 -> 2인 이상 채점 과목의 경우 인수인계 시 필히 매수 확인 -> 답안 채점 후 평가계 제출 과정시 매수 필히 확인

5. 부정행위자 처리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0점으로 처리함.

※ 부정행위 유형 - [별지 5] 참조

Ⅵ 2024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과목별 코드 안내

과목 코드	하다면니	계열	계열 코드	과목명	단위	과목 코드	학년	계열	계열 코드	과목명	단위

Ⅷ 2024학년도 정기고사 답안지 채점-1검-2검 담당교사 안내

순	채점교사	초검(1검)교사	재검(2검)교사
1			
2			

2024학년도 정기고사 원안 양식

2024학년도 0학기 0차고사 원광중학교											
학년	과목명	월	일	교시	출제		결	계	부장	교감	교장
					교사		재				
· 선택 [†]	· 선택형: ()문항 ()점, · 서답형: ()문항 ()점 ※ 문항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원광중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선택형 문항입니다. 문제를 읽고 알 맞은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중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르 면? (4.2점)

가. 나. 다. 라.

② 가, 나

④ 가, 나, 다 ⑤ 라

① 나

VIII |

※ 다음은 서답형 문항입니다.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답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으로 작성함.)

[서답형 1] 다음은~

※ 다음은 서술형 문항입니다.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답안지에 정확하게 서술하세요.

[서답(서술)형 2] 다음은~

※ 끝. 수고하셨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 ()학년 () 과목

1/2

③ 다, 라

워 광 중 학 교

IX 2024학년도 정기고사 문항정보표 NEIS 출력 제출 방법

- 1.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과목' 선택하고 {조회}
- 2. '<u>내용영역', '성취기준',</u> '난이도', '배점', '정답' 입력 후 {저장}
- 3. '시험 일시', '교시' 입력 후 출력하여 원안과 함께 제출

X │ 2024학년도 서술형 문항 채점표 양식

	2024학년도 1학기 ()과 1차고사 서술형 문항 채점기준표											
학년		과목코드			해당학급			실시 일자				
		()	(~)		월	일	요일	교시	
출제.	교사		(인)									

서술형 3)

	그분	내 용	배점
기본 답안			6
인정	인정1		6
인정 답안	인정2		6
부분점수 기 준			3

- ※ 기본답안: 답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본내용을 제시
- * 인정(유사)답안: 기본답안 외에 정답으로 인정·채점할 수 있는 반응 유형을 제시 (출제자가 설정한 기본답안, 인정답안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교과 지식이나 논리 체계상 정답으로 인정 가능한 답안 내용을 제시)
- ※ 부분점수 부여기준
 - 기본답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요소가 복수 이상인 경우
 - 특정 대상의 구성요소를 2개 이상 제시하라고 요구한 경우
 - 답안 작성 내용이 단계, 혹은 과정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Ⅱ │2024학년도 서술형 답안지 양식

2024학년도 1학기	'] () <u>j</u>	출제교사 :	(인)	
서술형	문항 답안	감독교사 :	(인)	
과목코드	학 번	이름	실 계	이 일 자
()			월 일	요일 교시

※ 각 문제에 해당하는 답만 서술하시오.

서술형 3			
서술형 4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

■ 평가문항 점검 시 유의사항

- 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교과(학년)협의회 등을 통해 검토한다.
- ② 학생 입장에서 평가 문항을 점검하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내용 및 표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확인 후 조치해야 한다.
- ③ 출제자는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④ 출제원안 및 문항정보표는 해당 교과 담당교사들의 공동 출제 및 점검 사항임을 유의 해야 한다.
- 예) 공강 시간을 활용한 공동 검토 시간 확보

■ 출제 단계별 평가문항 점검사항

※ 고사과목당 점검표 하나씩 작성함.

		확인	결과	비고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이상 없음	검토 필요	(검토가 필요한 항목 서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에 ①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문항정보표가 작성되었는가?			예) 성취기준에 없는 문항 출제
	①에 따라 작성된 문항정보표에 부합하는 평 ② 가문항이 출제되었는가?			
출제 전반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요소)의 ③ 범위'를 벗어난 평가 문항은 없는가?(선행학 습 내용 출제 금지)			
	④ 수업목표나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평가하는가?			
	⑤ 평가 문항이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출제되었는가?			
	⑥ '성취기준의 수준별 특성(상, 중, 하)'을 고려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는가?			

7	전체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적절한가?		
8	문항 난이도에 따른 배점은 적절한가? * 역배점 유의		
9	서답(서술)형 문항에 배점 기준(평가 요소별 또는 조건별 '부분점수' 부여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는가?		
10	각 문항의 내용상 오류가 없는가?		
1	문항 간섭(다른 문항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항 등)이 있는가?		
12	문항 오류 및 복수 정답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13)	정치, 종교, 문화 등의 편향성이 있는 문항은 없는가? * 객관성 결여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항 출제 여부 검토		
14)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 인가?		
15)	'특정 학급이나 학생'에게 출제 문항을 암시하였는가? * 문제 유출 의혹 검토		
16	기출문제나 시중 참고서의 문제 등을 그대로 출제한 문항은 없는가?		
17)	고사 원안의 편집 오류나 오탈자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가?		
18)	교과(학년)협의회에서 평가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공동 출제(교사별 문항 수 분담 출제 지양) 및 검토하였는가?		
19	같은 학년, 같은 교과를 2인 이상 교사가 가르친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통 으로 가르친 내용으로 출제하였는가?		
20	교과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는 과목별, 교과(군)별 또는 학년별 교차점검을 하 였는가? * 학교실정에 따라 교차 점검		

		발문의 초점이 분명하고 출제 의도가 명 확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② 발문에 불필요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 는가?
	발문/	③ 부정형 발문의 경우, 진한 글씨로 표시 되어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가?
	지문/ 보기(또는 자료)	학생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시하였는가? * 정답에 대한 논란 및 이의제기 등을 고려
	7411)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과 수업 시간에서 다룬 지문을 활용하였는가?
		⑥ 제시된 자료(또는 보기)에는 오류가 없는가?
		⑦ 정답의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가?
사		① 선택지에 불필요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원 안		두 개 이상의 선택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② 요소로 인하여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이 있는가?
		③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된 선택지가 있는가?
	선택지 전반	선택지 번호가 중복되었는가? 2. ① ②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5점) ① ③ 괴암즉: 사랑함직 ④ ① ① 녀기실시: 여기심에 ③ ⓒ 코니와: 물론이거니와 ④ ② 디논: 지는 ⑤ ⑪ 어엿븐: 예쁜
		⑤ 모든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가?
		⑥ 모든 선택지가 오답이 될 수 있는가?
		(기문', '보기(또는 자료)'와 관련없는 내용 으로 선택지를 구성하였는가?
		8 정답 선택지가 오답의 논란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

		9	오답 선택지가 정답의 논란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		
		1	고사원안과 문항정보표의 배점 총점 (100점)이 일치하는가?		
		2	고사원안의 정답과 문항정보표의 정답이 일치하는가?		
		3	고사원안과 문항정보표의 내용(고사명, 고사일시, 과목명, 학년 등)이 일치하는가?		
		4	고사원안에 전체 쪽수와 해당 쪽을 표시 하였는가?		
		5	고사 원안의 배점 표시는 문항정보표와 상호 일치하는가?		
	기타	6	고사 원안에 무단 사용 금지와 관련된 문구를 명시하였는가? 예)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 물이므로 전제·복제, 전자출판 등은 금지되 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 을 수 있습니다.		
		7	글자 모양(글꼴, 글자색, 크기 등)이 통일 되어 있는가? * 편집 오류로 인한 정답 암시 유의		
		8	문항정보표(서답형, 서술형 등)에는 채 점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출제교사 (), ()

73	계	부장	교감	교장
결 재				

고사감독 배정 및 감독수행 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리스트
- 감독 배정	 ✓복도감독관 운영 적극 권장 ✓해당 교시 과목담당교사는 고사 감독에서 배제하고 고사시간 중 대기 ✓담임교사의 학급 감독배치 금지 ✓학부모 감독의 해당 자녀 고사실 배치 금지, 정감독 배정 금지 ✓학급별 감독교사를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당일 게시 원칙 준수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감독교사는 학교 실정에 따라 적의 배정하되, 학생이 사전에 감독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조치 ✓감독교사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고사 전 또는 후에 학교장 결재 후 교체하도록 하여 공정성 확보(감독교사 임의 교체하여 사안 발생 시 혼란 야기) ✓복수감독교사제, 시차제 등교로 학년 구분 실시, 학부모 보조감독제, 복도감독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 모색 ✓답안지 교체 가능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감독교사가 임의로 답안지 교체 여부를 판단 처리함에 따른 형평성 시비 예방 ✓고사 시간 내에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처리 지침이 불명확하여 감독교사별 임의 처리에 대한 형평성 시비 예방 등
감독수행	 ✓다른 학급의 문답지를 가져가는 사례, 미리 문답지를 가져가 책상에 방치하는 사례, 화장실에 들렀다 분실하는 사례 등 실수 미연 방지 ✓부정행위 예방 조치(휴대전화 수거, 자리 바꿔 앉히기, 종료 후의 정숙 유지 등)를 충분히 실시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행위 유발에 대한 시비 사전 예방 ✓감독교사의 지나친 감독 행위로 인한 학생 시험방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유의(감독교사의 불필요한 언행 금지) 등 ✓감독교사의 실실 시간 차이에 따른 실제 고사 시간 미확보에 대한 시비 사전 예방(예비령 활용) ✓감독교사의 고사 시간 혼동으로 일찍 종료하여 생기는 시비 예방 철저(칠판에 반드시 정확한 고사 시간 기재 등) ✓학생이 고사 종료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답안지에 이기하지 못하는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수립 ✓정해진 고사 시간을 확보하여 감독하고 감독교사가 임의 조정하여 공정성시비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 ✓감독관 서명 시 약자를 사용하지 말고 날인하거나 정자로 서명하여 위조예방 ✓OMR 답안지나 서답형 답지에 감독교사 서명(1인 감독의 경우 예방책 수립) ✓답안지 매수와 응시자 수 일치 여부 철저 확인(반드시 답안지 순서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고사본부에 제출하도록 사전 연수) ✓교환·회수·폐기 답안지 및 여분의 문제지 모두 회수 등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유형	 ✔이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감독교사에게 직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팔짱을 끼고 한 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 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줌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줌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사지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시험 종료 후(또는 시작 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이 외의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에 준하여 적용
부정 행위 예방 조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행위 방지에 도움)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 담당 교사가 철저히 관리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가 잘못된 사항 이외에는 질문을 받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받게 함(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 유의).
부정 행위 처리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부정행위 가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구분	절차별 업무처리
학업성적 관리규정 확인	○인정점 부여 관련 규정 확인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규정 제정 확인(과목별 결시생 명단 포함) ○제출 시기 및 필요 증빙자료 확인: 결석 신고서, 공문,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 진술서, 사망 확인서 등 서류
서류제출	○결석 신고서 및 증빙자료(서류제출 기한 확인)
인정점 부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시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인정점 부여(인정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 -부정행위자 성적 처리 ○인정점 대상자 관련 제출 자료 학교장 결재 ○NEIS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입력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 관리]에서 반드시 일반결시는 {평균점수비율}, 모두결시는 {학교자체인 정정부여}로 설정
학기말 성적처리	○ 성적 산출 대상(고사/영역) 관리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 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학년', '산출기준'을 선택하고 {조회} → 반드시 '기준고사/영역'설정 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설정) ○ 성적 산출 학생 관리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학년', '산출기준', '과목', '포함여부'를 선택하고 {조회} → '대상자포함 여부'를 확인 → {저장} ○ NEIS 인정점 산출 대상자 : 인정점 부여 - 일반 결시;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학년', '산출기준', '과목'을 선택하고 {조회} → {인정점산출} 하여 산출된 결시생의 인정점을 확인 → {저장} - 모두 결시: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수동입력}에 계산된 기준점수와 인정점을 직접 입력 ○ 학기말 성적 산출(과목별) ○ 인정점 산출 대상자 자료와 증빙자료 합철 보관(감사 시 확인 자료)

1.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및 부여

정기고사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시를 하는 경우, 아래의 2. 결시생 인정점 산출방법 및 3. 인정비율 부여 방법을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로 인정점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중학교의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
 - * 평균점수 비율(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동일 학기 내 고사 간의 난이도 차를 반영하여 인정점 부여
 - 평균점수 비율(인정점)
 - = 학생 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결시고사 해당과목평균(순수응시생)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 기준점수
 - = 학생 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결시고사 해당과목평균(순수응시생) 응시고사해당과목평균(순수응시생)

2.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방법

- 가. 일반 결시: 동일 학기 내 1차, 2차 지필평가 중 1회의 성적이 없는 경우
 - NEIS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 산출됨
 -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 에서 '학년도', '학기', '학년', '산출기준'을 선택하고 {조회} → 반드시 '기준고사/영역'설정 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설정
- 나. 모두 결시: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처리
 - NEIS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계산된 기준점수와 인정점 직접 입력
 -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모두결시}에서 {학교자체인정점부여}로 설정
 -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수동입력}에 계산된 기준점수와 인정점을 직접 입력

- ▶ 평균점수 비율(인정점)
- = 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 기준점수
- = **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유사) 과목 응시고사 점수** × <u>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u> 직전 학기 동일(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

1순위: 직전 학기 내 동일 과목 응시고사 점수 활용

'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 과목 응시고사 점수'는 <u>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1, 2차</u> 고사 성적 중 하나로 결정함.

↓(직전 학기 내 동일 과목의 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2순위: 직전 학기 내 유사 과목(교과) 응시고사 점수 활용

- ①학생의 직전 학기 유사 과목(교과)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②'학생의 직전 학기 유사 과목(교과) 응시고사 점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 1, 2차고사 성적 중 하나로 결정함.

↓(직전 학기 내 동일(유사) 과목(교과)의 성적이 없는 경우)

3순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한 별도의 기준점수 활용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점수는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로 한다.

3.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명시된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2) 기타결석(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 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 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
- 다) 법정 감염병이지만 학교장의 사안 판단 하에 격리된 시험장 설치를 통한 시험 응시를 요구하였으나 학생과 보호자가 거절하며 결시를 원할 경우

다.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하는 경우

-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 도피 등)
- 나)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라) 징계로 인한 결시
- 마) 학업중단 숙려기간 중의 결시
-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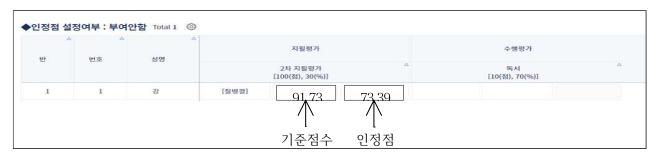
- 가) 부정행위자
- 나) 부정행위 협조자

4. 인정점 산출 예시

- ※ (예시) 2학기에 지필고사 1회만 실시하는 A과목을 질병결석으로 미응시한 학생의 인정점 산출 및 NEIS 입력 방법
 - 1) 인정점 산출에 필요한 점수 확인
 - ① 직전 학기의 A과목의 지필고사 평균 점수: 75점
 - ② 직전 학기 학생의 A과목 점수: 86점
 - ③ 결시 고사의 A과목 지필고사 평균 점수: 80점
 - ④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질병결석 반영비율: 80%
 - 2) 산출 계산식
 - ① 기준점수
 - = <u>학생의 직전 학기 동일(유사) 과목 응시고사 점수</u> × <u>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u> 직전 학기 동일(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 응시생)
 - $= 86 \times \frac{80}{75}$
 - = 91.7333333...
 - ※ 기준점수 입력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91.73)를 입력
 - ② 인정점 = 기준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 = 91.733333... × 80% ●
 - **=** 73.3866666...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인정점 입력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73.39)를 입력
- 3) NEIS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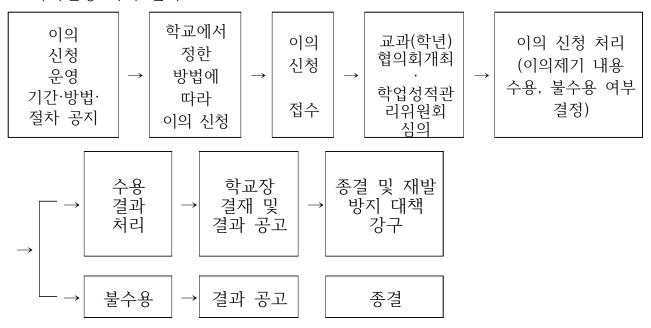


[별지 7]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 운영 목적: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성적처리
- 2.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은 정기고사 계획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내부결재 후 고사 실시 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 ※ 이의신청 운영 기간, 방법, 평가결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3. 이의신청 처리 절차



- 4. 이의신청 방법: (예시)학교에서 만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의신청 창구(서면 접수, 팩스 접수 등)를 통해 평가담당 교사가 접수한다.
- 5. 유의사항
- 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의신청 운영 기간, 방법, 절차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나. 이의신청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 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변경 전·후의 평가 관련 서류는 학교장 결재
- 라. 평가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6.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관련 이의신청서(학교제출용)

20○○학년도 ()학년 ()학기 평가 관련 이의신청서(예시)

이의신청자	학번: () 성명: ()	이의신청일	20
평가 유형	(지필평가(1차, 2차), 수행평가)	평가 실시일	20
평가 과목명		교과 담임	
	문항 오류(부적절 포함)		
이의신청 유형	정답 오류		
(해당 유형에 ○표)	채점 오류		
,	기타(성취기준 부적합 등)		

○ 이의신청 내용(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 오류, 기타)

※ 필요 시 관련 자료나 증빙 자료를 별도로 추가하여 제출 가능

이의신청 처리 과정(아래 내용은 학교에서 작성)						
교과(학년)협의회 개최일	20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일	20		
하고자 겨제이	20		겨라 고급이	20		

○ 이의신청 처리 결과

※ 이의신청 결과 공고 시 원본은 학교에 보관, 사본은 해당 학생에게 제공 가능

[별지 8]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종 류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탁학생 (위탁교육기관)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적사항	•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수업일수는 재적학교의 수업일로 계산하여 인정함. 	 위탁교육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 처리함. 	 소속교의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 격수업 출결을 합산하여 처리함.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 은 소속교에서 출결 처리함.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산출 소년보호기관 (교과교육과정 개설 소년원학교)〉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함.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압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압력함. 소년원학교의 2차 지필평가 시작 직전일까지 입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적교 시험 응시 및 재적교에서 성적처리함.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성적산출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명균자, 석자등급 등)이 산통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입력함.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성적미산출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시 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함).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성 적산출에 포함).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각종 비교과 영역	• 소년보호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 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 를 그대로 인정함.
교육정보 시스템	소년원 교과교육과정개설 소년원학교: 위탁학생 관리 교과교육과정미개설 소년원: 미인정 결석 처리 7호 처분자: 위탁학생 관리 8호 처분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소년분류심사원: 재적교 출석인정 결석 성소년비행예방센터: 재적교 출석인정 결석 정소년비행예방센터: 재적교 출석인정 결석 정 결석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NEIS의 위탁학생 [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 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 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별지 9]

재시험 처리

1.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 가.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 나. 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신뢰도가 떨어진 경우

2. 재시험 절차

- 가. 출제오류 내용 분석 및 교과(학년)협의회 개최
- 나. 관계자 사유서 징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책 수립 및 학교장 결재
- 라. 출제오류 및 재시험 일정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마. 재시험 실시, 채점, 검토, 성적처리
- 바.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원 대상 연수 실시 및 사안 보고

3. 관련서류 보완

- 가. 재시험 문항에 대한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추가 작성·제출
- 나. 재시험 일정 마련

4. 재시험에 따른 NEIS 처리 단계

- 학기말 반영비율 30%인 1차고사 선택형 문항(5점 배점)의 출제오류 시 NEIS 재시험 처리 과정

작업순서	순서별 작업 내용	비고
1차고사 수정	단계	
사전작업	- 해당 지필평가일람표 기결문서 취소	
1단계	- 1차고사 마감취소: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마감관리] → {조회} → {마감정보저장} → '마감안됨'으로 변경 확인	
2단계	- 1차고사 문항정보표 마감취소: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확인 후 '고사', '학년', '과목'을 선택하고 {조회} → {마감취소}	
3단계	- 1차고사 문항정보표 수정: {오류 문항에 대한 배점만 'O'점 처리 후}-{저장}-{마감}	

	,	
4단계	- 1차고사 과목만점 및 학기말 반영비율 수정: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지필평가과목관리] → {조회} → {학기말반영 비율}, {과목만점} 수정→ {저장} <예시> 100점 만점에 30% 반영하는 과목에서 5점 문항 오류 시 수정값 ∘학기말 반영비율: 30% → 28.5%, 과목만점: 100점 → 95점 ○ 기존의 만점: 변경되는 만점 = 기존의 반영비율: 변경되는 반영비율 ○ x(변경되는 반영비율)=(변경되는 만점×기존의 반영비율)/100 - 1차고사의 학기말 반영비율 계산 100:95=30:x x=(95×30)/100 ∴x=28.5	
5단계	- 1차고사 재채점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채점]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과목'을 선택하고 {조회} → {학생답안서답형 선택} → {해당 강의실 체크} → {일괄채점}	
6단계	- 1차고사 마감: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 '과목', '강의실'을 선택하고 {조회} → 점수확인 후 → {마감}	
1차 추가고시	h(재시험) 처리 단계	
7단계	- 1차 추가고사(재시험) 등록: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 → {조회} → {행추가} '고사명(1차 추가고사 등)', '학기말 반영여부("0")', '시행일자', '정렬 순서'를 입력 → {저장}	
8단계	- 1차 추가고사 과목만점 및 학기말 반영비율 입력: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지필평가과목관리] → {조회} → {학기말반영비율}, {과목만점} 수정→ {저장} <예시> 100점 만점에 30% 반영하는 과목에서 5점 문항 오류 시 입력값 ○학기말반영비율: 1.5%, 과목만점: 5점 ※ 지필평가 30% 반영 교과의 5점 추가고사 시 학기말 반영비율 계산식 ○ 기존의 만점: 변경되는 만점 = 기존의 반영비율: 변경되는 반영비율 ○ x(변경되는 반영비율)= (변경되는 만점×기존의 반영비율)/100 - 1차 추가고사 반영비율계산 100:5=30:x x=(5×30)/100 ∴ x=1.5 ※ 소수 3자리 이상 발생될 경우와 결시자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 설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9단계	이후 단계는 지필평가 성적처리와 동일	
10단계	- 결시생 인정점 처리는 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 관리 설정: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 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학년', '산출기준'을 선택하고 {조회} → 반드시 '기준고사/영역' 설정 시, '1차고사 ⇒ 2차고사, 1차추가고사 ⇒ 1차고사, 2차고사 ⇒ 1차고사' 또는 '1차고사 ⇒ 2차고사, 2차고사 ⇒ 1차고사, 2차추가고사 ⇒ 2차고사'	
승인요청 단계		
11단계	- 1차고사 및 1차 추가고사 승인요청: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마감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고사', '학년'을 선택 {조회} → {마감정보저장} → {확인} → {승인요청}	

2024 학생평가 시행 보안관리 점검표

고사명	학기 차고사		점검일자		2024.	. (요일)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장교사	()	너명)	확인자 (교감)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 관련 자료(원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출제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감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	13. 평가 업무담당교사의 입회하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 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 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17.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시행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채점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フ) F}		
117		
이건		
의긴		

※ 위 서식은 PDF파일로 제출(한글 hwp파일 제출 안 함)

- 91 -	
--------	--